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부승찬 · 문진석 · 박선원
한준호 · 문대림 · 박정현
장철민 · 손명수 · 김문수
김한규 · 안태준 · 김영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(AI)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주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명시된 ‘국방기술의 기획·관리·평가’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,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,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7조제2

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03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”을 “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방위사업법」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
2.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·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
3. 제1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
4.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.

③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

제17조제2항 중“국방기술품질원의 장”을 “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, 국방기술품질원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한 종전의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방위사업법」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1. ~ 7. (생 략) 8.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. (생 략)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	제16조(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9. (현행과 같음)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방위사업법」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1.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2.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 · 관리 및 기

<신 설> 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국방기술품질원의 장</u>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<u>술이전의 촉진 등</u> 3. 제1항제7호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4.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5.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 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, 국방기술품질원의 장</u>-----.
---	--